「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」 협약서

한국정보산업엽합회(이하"운영기관"이라 한다), (주)브랜드콘텐츠(이하"연수업체"라 한다), 정우희 등 3명(이하 "실습생"이라 한다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ICT분야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3년 상반기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」국내과정 시행과 관련하여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.

○ 사 업 명 :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

○ 협약기간 : 2023년 3월 1일 ~ 2023년 6월 30일

○ 실습장소(사업장 주소): 서울 강남구 선릉로107길 13.4층

○ 실 습 생 : 총 3명

No	성명	소속대학명	학과명(ICT관련학과)	학년	성별
1	정우희	용인대학교	컴퓨터과학과	3	О
2	박윤희	동덕여자대학교	정보통계학과	4	ОЙ
3	이현중	강남대학교	데이터사이언스학과	4	남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"운영기관", "연수업체" 그리고 "실습생" 간 「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(이하 "인턴십"이라 한다)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.

제3조(실습장소) 실습장소는「연수업체 운영계획서」에서 지정한 "연수업체" 사업장으로 한다.

제4조(실습조건) ① "실습생"의 실습조건은 "연수업체"와 "실습생"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실습 시간 : <u>09:00~18:00</u> (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)

가. "연수업체"에서는 실습 시간 외 연장 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 시간 한도로 사전 "실습생"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1주 최대 5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 후 운영하여 야 한다.

- 2. 실습 일수 및 요일 : 주5일제 (월요일~금요일)
 - 가. "연수업체"에서는 실습 요일 외의 휴일(토, 일, 공휴일) 및 사전 협의 및 동의되지 않은 야간(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)에는 실습을 시킬 수 없으며, 불법·유해·위험한 내용에 대한 실습을 시킬 수 없다.
- 3. 휴게 및 휴일: "연수업체"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,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, 협약기간 중 "실습생"의 공적 의무 수행일, 경조사일,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.
 - 가. "연수업체"에서는 위 휴일 외 "연수업체"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.
- 4. 복리후생 : "연수업체"는 「연수업체 운영계획서」내 기재한 복리후생 및 기타 지원사항을 "실습생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복리후생	식사 []	교통	[]	기숙사	[]		
기타 지원사항	• 사내 간식 및 식사대용 식품 제공 • 사무용품 지원									

- ②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턴십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"연수업체"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- 1. 재택실습 기간은 출석일수로 인정한다.
- 2. 재택실습 실시 시 "실습생"이 소속된 "참여대학"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"연수업체"에서는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"연수업체"의 소속 직원의 복무(또는 근무)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
- 2. "연수업체"가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"실습생"에게 제공하는 경우
- 제5조(운영기관의 의무) ① "운영기관"은 "연수업체"에게 전담인력 확보, 실습생수당 지원,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 등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인턴십 운영 지원금(정부지원금)을 지원해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인턴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 등을 관리해야 한다.

- **제6조(연수업체의 의무)** "연수업체"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가진다.
 - 1. "연수업체"는 전담 "지도인력"을 지정·배치하고, "실습생"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하여 실습목적에 부합되는 관련 직무를 부여하는 등,「연수업체 운영계획서」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본 인턴십을 운영해야 한다.
 - 2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에게 월 최저임금액 기준 이상 금액으로 실습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
 - 3. "연수업체"는 "운영기관"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실습생 수당 지급 이행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*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연수업체는 별도 양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* 지급보증보험 : 보증보험사가 미지급된 실습생 수당을 연수업체 대신 변제하는 경우 보 증보험사는 연수업체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
 - 4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실습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.
 - * 단, 대학에서 현장실습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인턴십을 운영하여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"운영기관"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 - 5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, 출결사항을 관리해야 한다.
 - 6. "연수업체"는 협약기간 동안 "실습생"을 다른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시킬 수 없다.
 - 7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의 학점 인정을 위하여 소속 "참여대학"에서 별도서류 제출 및 점검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.
 - 8. "연수업체"는 "운영기관"이 사업 진행현황이나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· 점검 · 방문 등을 하는 경우적극 협조해야 한다.
 - 9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에게 실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- 10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이 인턴십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또는 상해보험 약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 - 11. "연수업체"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"실습생"에게 폭언 및 욕설, 폭행 등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2. "연수업체"는 기타 본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.

- 제7조(실습생의 의무) "실습생"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가진다.
 - 1. "실습생"은 본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점을 이수해야하고, 인턴십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.
 - 2. "실습생"은 사규 등 "연수업체"의 제반수칙을 준수하고, 성실하게 인턴십에 임해야 한다.
 - 3. "실습생"은 "연수업체" 사업장 내 시설·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 - 4. "실습생"은 인턴십 수행 중 알게 된 "연수업체" 사업장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- 제8조(실습생 수당 지급) ①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에게 본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실습생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 - 1.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에게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생 수당을 지급한다.
 - 가. 지급 금액 : 월 <u>2,100,000</u>원 지급 (4개월 간 총 8,400,000원/1인당)
 - 나. "연수업체"에서 연장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 - 다. 다만 "실습생"이 중도 포기하거나, 결석하는 경우에는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생 수당을 지급한다.
 - 2. "연수업체"는 3월~6월에 대한 월별 실습생 수당을 매월 [익월] 05일(익월 의 경우 7일 이내)에 "실습생"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며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"연수업체"가 실습생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 "실습생"에게 지급한다.
- 제9조(인턴십 운영지원금 지급) ① "운영기관"은 본 협약서와 관련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「인턴십 운영지원금("실습생" 1인당 120만원/월)」을 "연수업체"에 월별로 지급한다.
 - ② "연수업체"는 매월 인턴십 운영지원금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를 "운영기관"에 제출해야 하며 "운영기관"은 신청 서류를 검토 및 취합하여 익월 3주차에 지급한다.
- 제10조(정보제공) "운영기관"은 사업 성과조사 시 제3자에게 "연수업체" 소속 참여인력(행정담당자 및 지도인력) 및 "실습생"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제공하며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목적, 항목, 기간 등을 ICT인턴십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.

- 제11조(결과보고) "연수업체" 및 "실습생"은 협약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"운영 기관"에서 제공하는 서식의「결과보고서」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"운영기관"에 제출해야 한다.
- 제12조(협약의 변경) ① "운영기관"과 "연수업체", "실습생"은 상호협의 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 단, 동 인턴십 운영에 반하는 약정은 체 결할 수 없다.
 - ② 협약의 변경은 "연수업체"가 신청할 수 있으며,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협약의 변경은 "운영기관"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승인 또는 통보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, 이와 연관된 "참여대학"과의 협약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 - 1. 승인사항
 - 가. 프로젝트 내용 또는 목표 등의 변경
 - 나. 지도인력의 변경
 - 다. 일부 실습생의 중도 포기
 - 2. 통보사항
 - 가. 소재지 주소, 대표자 및 행정담당자, 명칭 등의 변경
 - 나.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④ "운영기관"은 변경 요청이 접수된 경우,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⑤ "운영기관"은 "연수업체"가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,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3조(협약의 해지) ① "운영기관"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"연수업체"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2. "연수업체"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
 - 3. "연수업체"가 "운영기관"의 자료 요청 및 지도, 점검, 방문 등에 불응한경우
 - 4. "실습생"이 "연수업체"와 상호 합의 없이 협약기간 중 연속해서 5일 또는 총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
 - 5. "실습생"이 질병, 재해로 인하여 남은 협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
 - 6. 그 밖에, "연수업체", "참여대학", "실습생" 중 누구라도 협약 내용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②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"연수업체"는 협약해지일 전까지 해당 사실 및 사유 등을 명기하여 "운영기관"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- ③ "운영기관"은 협약의 해지 시 협약기간 중 "실습생"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(인턴십 운영지원금)을 지급한다.
- ④ "연수업체"는 협약의 해지 시 협약기간 중 "실습생"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생 수당을 지급한다.
- ⑤ 협약 해지 사유에 따라, "운영기관"은 "연수업체" 혹은 "실습생" 중 협약 해지의 과실이 있는 참여 주체에 대하여 향후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제14조(인턴십 운영지원금 환수) ① "연수업체"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계 법 령 및 규정·협약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본 협약은 당연 해지되 며, 기지급된 정부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② "연수업체"는 협약의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한 환수대상액을 "운영기관"의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.
 - ③ "운영기관"은 "연수업체"가 환수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, 독촉 ·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, 형사고발 등 사업비 환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5조(안전·보건상의 조치) ① "연수업체"는 "실습생"의 협약기간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"실습생"은 인턴십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의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상해보험 약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 - ③ "연수업체"는 인턴십 중 "실습생" 사고 발생 시 "참여대학" 및 "운영기관" 담당자에게 즉시 사고 상황을 알린다. 시급한 경우 선 조치 후 "참여대학" 및 "운영기관" 담당자에게 알린다.
- 제16조(관계법령의 준수) ① "연수업체"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협약기간 중,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, 협약 당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- 제17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서는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유효하다.
 - ② "연수업체"와 "실습생"이 사전 협의 및 동의 하에 별도의 (근로)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본 협약서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(준용 및 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되,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※ 본 협약서는 "운영기관"과 "연수업체", "실습생"이 각각 보관한다.

- 붙임 1. 참여인력 확인서 1부.
 -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 끝.

2023년 3월 1일

							(a) (b) (b)
"운영기관"	한국정보산업연합회	회	장	정	진	섭	(21)
"연수업체"	(주)브랜드콘텐츠	대표	이사	최신원	원, 서	자영	
"실 습 생"	용인대학교	성	명	정	우	희	(STANED
"실 습 생"	동덕여자대학교	성	명	박	윤	희년	(d/MB)
"실 습 생"	강남대학교	성	명	01	현	중	0/200

참여인력 확인서

1. 연수업체 현황

기 업 명	(주)브랜드콘텐츠
협약기간	2023년 3월 1일 ~ 2023년 6월 30일

2. 참여인력 현황

(1) 연수업체

No.	참여 신분	성명	부서명	직위	참여인력 휴대번호	참여인력 이메일	담당 실습생
1	행정 담당자	이혜미	경영지원팀	과장	010-3626- 3364	support@content.co m	
2	행정 담당자	이지혜	경영지원팀	사원	010-5760- 5748	jh.lee@contentlap.c om	
3	지도 인력	최훈녕	프로젝트팀	팀장	010-9456- 3520	operating@contentla p.com	박윤희
4	지도 인력	이명재	연구개발팀	팀장	010-8071- 2484	t.brightj@contentlap. com	이현중 정우희

- ※ 행정담당자가 지도인력 역할을 병행 할 경우 참여 신분 란에 '행정/지도'로 표기
- ※ 담당실습생 란은 지도인력만 기재(실습생 1명 당 1명의 지도인력만 배정 가능)

(2) 실습생

No.	신분	성명	소속대학명	학과명	학년
1	실습생	정우회	용인대학교	컴퓨터과학과	3학년
2	실습생	박윤희	동덕여자대학교	정보통계학과	4학년
3	실습생	이현중	강남대학교	데이터사이언스학과	4학년

위와 같이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인력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3월 1일

(주)브랜드콘텐츠 대 표 자 최신원,서자영



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 귀하

[서식③]

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□ 연수업체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구분	성명	직위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서명)
행정담당자	이혜미	과장	ग्रेसाव
행정담당자	이지혜	사원	०) ये आ
지도인력	최훈녕	팀장	到表写
지도인력	이명재	팀장	0/000
지도인력			

- * 필요 시 행추가
- 1. 본인은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사업의 전담기관·운영기관(정보통신기획평가 원·한국정보산업연합회)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가. 수집·이용목적 : 협약 체결, 운영지원금 지급, 수행현황 점검 및 성과조사 등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운영 및 관리
- 나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(필수) 이름, 전화번호(일반번호, 휴대번호), 전자우편, 부서, 직위 (선택) 경력(기간, 직위 등), 기타 이력 등
- 2. 작성 시점부터 해당 과제 참여 종료 시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.
- 3.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협약 체결 및 수당 지급 등이 불가하여 해당 사업 참여가 어려우므로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3. 1.

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/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 귀하